투자계약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식회사 부산은행

-투자자-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

-집합투자업자-

2022년 6월4일





투자계약서

이 투자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신탁인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이하 "이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설정 및 투자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되었다.

1. 투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에 본점을 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제1종 수익증권 투자자"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제2종 수익 증권 투자자"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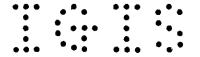
2. 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에 본점을 둔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집합투자업자"라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계약의 목적)

(1) 이 계약은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들은 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수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을 자본시장법에 따른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운영하고자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계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상 명백히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채 택되는 신탁계약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자본시장법령"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 밖에 이에 따라 제정되는 모든 관계법규를 의미하며, 이 계약 체결 이후수시로 개정되는 것 및 이를 대체하는 내용으로 제정, 시행되는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 2. "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정도로 경영 전반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 당사자에 의하여 통제·지시 받거나 또는 각 당사자를 통제·지시하는 자, 또는 각 당사자와 함께 동일한 자로부터 경영상의 통제·지시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통제·지시"라고 함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임원의임면 등으로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운영 및 정책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기준가격"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및 신탁계약 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의미한다.
- 4. "납입기일"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각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입대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하는 날로서 제8조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 5. "납입불이행당사자"라 함은 제10조 제1항에서 정의되는 바에 따른다.
- 6. "당사자"라 함은 이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및 집합투자업자를 의미한다.
- 7. "매입"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각 투자자가 매수하고 그 매수



대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매입약정금액"이라 함은 각 투자자가 이 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미 매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되, 동 금액은 수익증권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계약 체결일 현재 각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은 별지1의 '매입약정금액' 항목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
- 9. "메입약정기간"이라 함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 당시에 메입한 것 이외에 제6조에 따라 추가 메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으로서 제7 조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 10. "메입약정총액"이라 함은 투자자들이 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메입약 정금액(이미 메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 1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로서 이 계약 에서는 투자자와 동일한 의미이다.
- 12. "신탁계약"이라 함은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말하며, 이 계약 체결 이후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이후의 것을 의미한다.
- 13. "신탁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은행 및 그 적법한 승계인을 말한다.
- 14. "실시협약"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상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 15. "약정지분비율"이라 함은 매입약정총액에 대한 각 투자자의 매입약정금 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 계약 체결일 현재 각 투자자의 약정지분비율 은 별지1의 '약정지분비율'항목 아래 기재된 바와 같다.
- 16.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토요일 및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을 제외한다.
- 17. "지분비율"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미 납입한 매입대금의 합계액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각 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매입대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18. "지연손해금률"이라 함은 ① 신탁업자 법인용 정기예금(1년)이자율에



5%를 더한 이자율과 ② 연 10%의 이자율 중 더 높은 이자율을 말한다.

- 19. "집합투자업자"라 함은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 및 그 적법한 승계인을 말한다.
- 20. "투자"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 투자대상 법인 이 발행한 채권의 취득 및 그 법인에 대한 대출의 행위를 의미한다.
- 21. "투자자"라 함은 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중 집합투자업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
- 22. "투자자산"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지분, 채무증권, 대출 등 일체의 자산을 의미한다.
- 23. "회계기간"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말하고, 어느 년도의 분기에 해당하는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 말하고, 최초회계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그 설정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조 (신탁계약의 작성 및 이 계약과의 관계)

- (1)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 일반사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그와 같이 체결된 신탁 계약의 내용을 이 계약의 일부로 삼는다.
- (2) 본 협약과 신탁계약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투자자들과 집합투자업자 사이에서 법령 및 관련 감독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이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및 관련 감독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3) 신탁계약의 조항이나 사업설명회 자료의 내용 중 이 계약의 조항과 상충 되는 것이 있으면 이 계약의 조항이 우선한다.



제4조 (투자신탁의 설정)

당사자들은 이 계약 체결 이후 자본시장법령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신탁을 설정한다.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이 계약 및 신탁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자본시장법령 상의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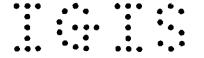
제2장 수익증권의 매입 및 처분

제5조 (최초 설정 시 신탁원본의 매입)

- (1) 최초 투자신탁 설정 시 수익증권은 최소 일백만(1,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일십만(1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설정 시 신탁원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신탁의 수익증권은 기명식 · 무액면으로 한다.
- (3) 각 투자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제1항에 따른 최초 설정 시 신탁원본액 중 각 투자자의 약정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회사에 현금으로 납입 하고,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시 발행된 수익증권을 약정지분비율에 따라 매입한다.

제6조 (추가 매입)

- (1)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입약정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매입약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8조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매입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약정지분비율에 따른 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2) 각 투자자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에 따른 추가 매입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3) 각 투자자는 매입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신탁계약서 제7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추가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제7조 (매입약정기간)

- (1) 매입약정기간은 투자신탁이 설정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다만, 집합투 자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입약정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매 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총 1회 연장할 수 있다.
- (2) 제1항의 매입약정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매입약정금액 전액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투자자들의 매입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약정기간 이후에도 투자자의 매입약정금액의한도 내에서 각 호의 해당 금액에 대한 매입의무를 부담한다.
 - 1. 매입약정기간 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과 관련한 취소불능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
 - 2. 투자신탁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 등 운전 자금 및 투자신탁이 제3자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상당한 금액

제8조 (매입시기)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판매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투자자는 정해진 납입기일에 당해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추가로 발행되는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의 청약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신탁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매입비율)

(1) 각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시, 수익증권 매입 후의 각 투자자의 지분비율이 약정지분비율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익증권을 매입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추가 설정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정해진 매입대금 납입 기일까지 약정지분비율에 따른 매입에 필요한 관계법령상 필요한 조 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매입에 필요한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관련 정 부기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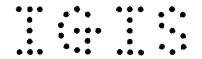
제10조 (매입의무의 불이행)

- (1)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이하 "납입불이행당사자")는 불이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매입대금 납입기일로부터 실제 납입이 이루어진 날까지 미납된 매입대금에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위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과는 별도로 납입불이행당사자는 매입의무 불 이행으로 인하여 다른 수익자 및/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제11조 (수익증권 매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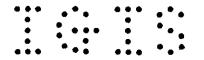
-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수익 증권발행 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우선적으로 매입 할 권리가 있다.
- (2) 투자자들은 본건 투자신탁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수익증권 환매청구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3장 투자자산의 운용



제12조 (집합투자업자의 독립적 운용)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들의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투자신 탁의 투자자산을 운용하며, 운용의 권한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전속적, 배타 적으로 귀속된다.
- (2) 투자신탁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 또는 동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취득하는 방법 등에 의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자산운용방침은 신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3) 이 계약은 각 투자자들이 적시에 매입약정금액을 납입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관여하기 위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4)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수입의 회수 등 투자자산의 제반 사후관리 업무
 - 2. 이 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매입약정 이행통지를 준비하고 발송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 및 투자 등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에
 게 운용보고서 및 기타 법령상 필요한 보고서의 작성 업무
 - 4. 투자신탁이 관계법령 등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투자신 탁의 일상적인 업무, 회계 및 보고사항에 참여하는 업무(다만, 관계법 령 및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상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 는 업무는 제외)
 - 5. 관계법령 및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따라 투자를 비롯한 투자신탁 자산의 평가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의 업무수행에 협조 하는 업무



- 7. 이 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수행할 것을 위탁한 업무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투자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제13조 (보수 및 수수료)

- (1)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
 -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보수
 -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보수
- (2) 제1항에서 정의된 보수 또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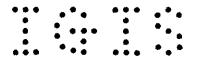
제4장 투자신탁의 계산

제14조 (회계)

투자신탁의 회계는 관계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이익분배 등)

(1) 집합투자업자는 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현금 보유분에 대하여 매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수익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하기로 한다.



- 1. 제1종 수익증권에 대한 선순위 분배 : 제1종 수익증권 투자자가 수익증권에 납입한 투자신탁금(기준가격을 불문하고 판매회사에 납입된 금액에서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의 연환산배당수익률 [3.70]% (내부수익률 기준)를 적용한 금액을 우선 배분한다. 제1종 수익증권은 이익분배에 있어서 이후 도래하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에 대한 분배에 관하여 누적적 우선수익증권으로 하고, 이 투자신탁의 당기 회계기간까지의 누적된 미분배 금액을 우선 분배한다.
- 2. 제2종 수익증권에 대한 후순위 분배 : 제1호에 따라 제1종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우선 분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2종 수익증권투자자에게 후순위로 분배한다.
- (2) 투자신탁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잔여금액의 분배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제1종 및 제2종 수익증권의 원본액
 - 2. 제1종 수익증권의 본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누적 미분배 금액
 - 3. 제2종 수익증권의 본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누적 미분배 금액
- (3) 투자신탁의 매 회계기간 종료 시, 현금 보유분의 범위 내에서 이익금을 초 과하여 분배(이하 동 분배금을 "이익초과분배금")할 수 있다.
-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대출 등이 매각 또는 상환 등으로 인 하여 조기에 현금화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임시 결산을 통하여 현금으 로 이익분배금 및/또는 이익초과분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5)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을 소유 수익증권에 비례하여 수익자들에게 배분한다.

제5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16조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은 본건 투자신탁이 설정된 날로부터 7년 6개월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3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날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 2.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날로부터 7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자금이 전부 회수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날로부터 전부 회수일까지

제17조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해지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그 밖에 이 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 (진술 및 보증)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한다.

-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법 또는 그 설립준거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이 계약에 따른 영업 또는 행위를 수행할 권한과 자격이 있다.
- 2.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 계약은 그 제반 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를 적법, 유효하게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며, 각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그 의무의 내용을 집행할수 있다.
- 3. 각 투자자는 제반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될



자격이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자격을 유지한다.

- 4. 각 당사자나 그 관계인은 신탁계약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보고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 없다.
- 5. 각 당사자에 대하여 이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계약 그 밖에 거래행위가 존재하 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그러한 사정이 존재할 것 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 6.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을 결정함에 있어 신탁계약 및 이 계약과 이에 따라 작성된 자료 또는 정보 이외에는 어떠한 자료나 정보에도 의존한 바 없다.

제19조 (확약)

각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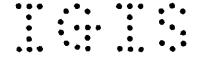
- 각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필 요한 정부의 제반 인허가를 획득하거나 정부에 대한 제반 신고, 등록, 통지 등을 함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 야 한다.
- 2. 각 당사자는 이 계약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 등에 포함된 모든 문서 및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작 성·전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각 당사자는 이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정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모든 승인, 동의, 합의 또는 면제를 획득하고,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과 양수인들에 대하여도 유효하고 이들에게 완벽한 구속력을 가진다.

(8) 통지 등

이 계약에 따라 어느 당사자에게 전달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 요청, 요구, 보고, 동의, 제의나 그 밖에 문서 또는 서류는 이 계약서의 첫 부분에 명시된 주소로 수령권이 있는 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거나 팩시밀리로 전송되고 수령확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전달되면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하여 여백)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6월22일

제1종 수익증권 투자자

한국해양진홍공사

669-82-00218

성명 :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직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금 용 금 용 투 자 금 용 지 원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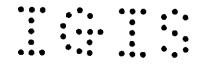
2022년 6월24일

제2종 수익증권 투자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성명 : 진영도

직위: 해양투자금융부장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6월24일

<u>집합투자업자</u>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



성명 :

직위 :

별지1

매입약정금액 및 약정지분비율

투자자	매입약정금액	투자신탁 약정지분비율
	(단위: 억원)	(단위 : %)
한국해양진흥공사	<u>600</u>	<u>68.03</u>
주식회사 부산은행	<u>282</u>	<u>31.97</u>
합계	<u>882</u>	<u>100%</u>



별지 2

수익증권 매입확약서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귀중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양진흥공사")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은 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해양진흥공사는 금육백억원(60,000,000,000), 부산은행은 금이백팔십이억원(28,200,000,000)을 한도로 향후펀드에서의 개별 투자 건들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서 및 투자계약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요청하는 일정에 맞춰 매 추가 설정시마다 약정지분비율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확약합니다.

2022년 6월 일

제1종 수익증권 투자자 한국해양진흥공사 대표이사 김 양 수 (인)



별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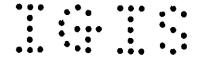
수익증권 매입확약서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귀중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양진흥공사")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은 이 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 사모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해양진흥공사는 금육백억원(60,000,000,000), 부산은행은 금이백팔십이억원(28,200,000,000)을 한도로 향후 펀드에서의 개별 투자 건들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서 및 투자계약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요청하는 일정에 맞춰 매 추가 설정시마다 약정지분비율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로 확약합니다.

2022년 6월 일

제2종 수익증권 투자자 주식회사부산은행 대표이사 안 감 찬 (인)



인 감



명사

법인등록번호: 181171-0005837



명 칭 : 한국해양진흥공사

주사무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씨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사장 김양수 (680328-1538611)

관할등기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mark>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mark>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7148214140108011510025200328150030T0M107B1D1S8P1 20

발급확인번호 PAWY-OCAH-HKUO

- 1/1 -



사용인감확인서

주식회사 부산은행 부점명;해양투자금융부 (한국을) 부점장성명;진영도	사 용 인 감	부 점 명
		부 껌 명 ; 해양투자금융부

위 인감은 당행 해양투자금융부 부장 진영도 이(가)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용도; 이지스울산신항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투자계약서 체결

2022년 06 월 23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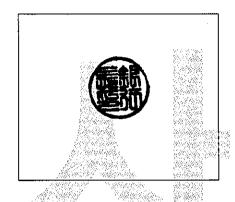
우리 주식회사 구 () 은행장 안 감 아 주식회사 부산은 행



귀중



법인등록번호 : 180111-0002997



株式會社 釜川銀行 상

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대표이사 안감찬

(631008-1320914)

관할등기소 :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법위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200원 영수함.

-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11700831211010001161002520062715010110A1K1D1K0S8P1 100

발급확인번호 CAWY-RFJM-HFH2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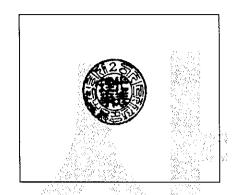


인 감



명 서

법인등록번호 : 110111-4310316



상 호 :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IGIS Asset Management Co., Lt

d.)

본 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여의

도동)

지배인을 둔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

4층(여의도동)

지배인 복준호 / 본점 (731204-1047419)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200원 영수함.

- 1.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11301772310010200151002520012310015304A1K1D1S0L1S1 50

발급확인번호 QAWX-WZJJ-NJ01